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0
----------	------

제출일자: 2019. 3. 11.

제 출 자: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 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및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상 지원근거 없는 감면 대상 삭제(안 제12조제3항제4호)

현 행	변 경	비고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법령상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음

나.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제9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2019. 1. 8. ~ 1. 28.

-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참전유공자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

우 : 100분의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 헬스에 한하여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_____ _____ _____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u> 을 소지한 사람	4. _____ _____ <u>참전유공자증</u> _____ _____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u>9.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u>
<u>9.</u>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u>10.</u> _____ _____ _____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